제2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2. 2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2월 21일
전문위원 정 우 숙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9 - 7

나.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년 1월 31일

라. 회부일자 : 2019년 2월 13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행정서비스 공유 및 포용적 동반 발전을 구현하고자 창립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운영규약의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및 목적 정의(제1조~제2조)

1)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

나. 기능(제3조)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성(제4조) - 규약안 별표 참조

1) 가입예정 회원현황 : 77개 지방정부(2018. 10월 기준)

라. 임원 및 임기(제5조~제6조)

1) 회장1명, 감사1명, 부회장·사무총장·사무부총장(회장이 추천, 부회장·사무부총장 복수 가능)
2)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3) 임원의 임기는 1년, 1회 연임, 위원 임기는 직위 재직기간
4) 부단체장 또는 권한 위임 받은 지자체 간부 대리 참석 가능(토의, 표결권 有)

마. 회의 및 의결 (제7조~제8조)

1) 정기위원총회 연 2회, 임시위원총회(회장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 동의시 소집), 회장단 회의(회장 또는 부회장 1/3 이상 동의시 소집), 서면회의(경미 또는 긴급 사안, 회장단 회의 인정 시)
2)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긴급,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3)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회장단 회의에 필요시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 배석

바. 의안의 제출 및 의견 청취 (제9조~제11조)

1)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상정할 의안 제출토록 통보
2)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상정 의안을 회장에게 제출

3) 협의회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긴급, 불가피한 경우 당일 배부)
4)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 출석

사.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2조)

1) 회장은 회의록 작성, 회원에게 통보
2) 회장은 심의·의결한 사항은 조치를 취하고, 추진상황을 차기 회의 시 보고

아. 사무국과 업무 (제13조~제14조)

1) 사무국장 1인(회장 임명), 직원으로 구성
2) 사무국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세칙으로 정함
3) 업무: 회의 개최 및 회의록 관리, 예산업무, 정부·유관기관 협력,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정보 관리,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 위임 사항

자. 자문위원 (제15조)

1) 자문위원(외부전문가)는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 위촉

차. 경비 및 회계처리 등 (제16조~제19조): 부담금 연 5,000천원

1) 수입금: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
2) 부담금·특별부담금(필요 시) : 회장단회의에서 정함
3) 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경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 (회계연도 1월1일 ~ 12월31일)

카. 감사(제20조)

1) 매 회계연도말 이전에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실시
2)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 지정·대행 가능(3일 이내 실시, 필요 시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 연장 가능)

타.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 (제21조~제22조)

1)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2) 규약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52조에서 제158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95조에서 제102조

나. 예산조치

1) 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추경예산 편성
2) 협의회 부담금 매년 500만원 예산 반영

5. 검토의견

○ 본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 법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창립준비회의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정하여 각 기초 자치단체별로 규약안의 의회 동의를 통해 회원 가입을 받고 있음

○ 규약에서는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전국 7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음.(서울시 15개구)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하여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 하는 행정협의회 임.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참여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촉진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며, 자치단체간 호혜적 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 참여 및 규약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협의회 부담금 납부에 따른 예산부담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

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